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8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81996 취득세 등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redacted]공사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구합768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가산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한 각 가산세 합계 28,710,550원([redacted]변전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련) 및 37,774,390원([redacted]변전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8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제20조 제6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김복형

판사 남양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8

별지

가산세 부과내역

구분	부과처분 일자	세목			
		가산세 합계	취득세 가산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농특세 가산세
[redacted]변전소	2016. 1. 4.	**28,710,550원**	28,076,670원	281,730	352,150원
[redacted]변전소	2016. 1. 4.	**37,774,390원**	35,314,350원	1,423,470	1,036,470원
합계		66,484,940원	63,391,020원	1,705,300	1,388,620원

끝.